

후고 그로티우스와 존 로크의 所有權思想

姜台星*

I. 序論

인간은 물건을 이용·지배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태초의 原始時代 이래로 인간에의 물건의 歸屬關係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존·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有限하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無限하다. 이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 이러한 귀속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이 귀속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인 所有權에 관한 思想과 이에 터잡은 일정한 秩序(制度)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즈(Thomas Hobbes)가 그의 著書 레바이어탄(Leviathan, 1651년 간행) 제1부에서 말한 “萬人的 萬人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 야기되어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homo homini lupus)”인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人生은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 것”으로 될 것임은 명백하다.

이리하여 인간의 理智가 발달함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思想과 이에 근거한 질서(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自由民主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상이 相異하며,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각종의 소유권

*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部 副教授

에 관한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유권에 관한 사상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시시대 이래로 소유권에 관한 사상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本稿에서는 그 일부로서, 近代自然法論者인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所有權思想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후고 그로티우스의 所有權思想

1. 序說

1625년에 파리(Paris)에서 간행된 후고 그로티우스의 著書인 「戰爭과 平和의 法(De Jure Belli ac Pacis)」¹⁾은 기본적으로는 國際法에 관한 저서이다. 그러나, 이 저서는 또한 自然法理論을 해설하는 가장 최초의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저서들 중의 하나이다.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Netherland)의 국민이었다. 그 당시의 네덜란드에서는, 中産階級이 絶對主義에 대항하여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으며 또한 自然哲學者들(natural philosophers)이 새로운 과학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로티우스는 종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主義(Protestantism)의 初된 教義를 받아 들이는 아르미니우스派(Arminius)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神과 自然은 合理的 原理에 따라 행동하며 또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神의 法과 自然의 法은 사람의 理性的 法일 뿐이다. 특히, 그로티우스는 그 생존 당시에

1) 이 책은 版을 거듭하였으며, 版을 거듭함에 따라 改訂·增補되거나 註釋이 附加되었다. 특히, 이 책은 다수의 言語로 번역되었다. 예컨대, 英譯으로는, F. W. Kelsey and others, tran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London, 1925이 있고, 日譯으로는 一又正雄(譯), グローチウス戰爭と平和の法①~③, 酒井書店 育英堂, 1972이 있다. 本稿에서는, Richard Schlatter, Private Property, New Brunswick i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51에 引用된 F. W. Kelsey and others, tran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London, 1925를 再引用하기로 한다.

있어서 가장 博學한 사람 중의 一人이었으므로, 그는 古典的 哲學者(正統派 哲學者)들·로마(Roma)法과 教會法·中世의 理論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존 당시에 있어서 카톨릭(Catholic)的 입장에서 또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的 입장에서 絶對主義를 반대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로티우스의 所有權理論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要素들을 포함하였다. 즉, 그는 이러한 要素들을 自然權哲學의 방식에 따라서 새롭게 결합시켰다.

그로티우스는 그의 著書인 『戰爭과 平和의 法』의 序文에서, 自然法을 '정당한 理性的 命令'으로 定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法(自然法)이 聖經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는 그 前의 프로테스탄트의 이론을 명백하게 否認하였다. 舊約(Old Testament)에 나오는 많은 規範들은 神의 實在的인 명령들이며 그리고 이들 규범이 自然法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연법의 일부는 아니라고 그로티우스는 말하였다. 예컨대, 新約(New Testament)은 基督教徒들에게 自然法에 의하여 요구되는 완전함보다도 더욱 완전해질 것을 강요한다.²⁾ 그로티우스는 모세(Moses)의 10 戒名 중의 제7계명(the Seventh Commandment: 도둑질하지 마라)을 引用하지 않고도 도둑질을 비난하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理論家들 중의 一人이었다. 대신에, 그로티우스는 도둑질이 자연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로마大法典(Corpus Juris Civilis) 중의 學說彙纂(the Digesta)를 引用하였다.³⁾

2. 내용

이처럼 합리적인 자연법은, 물론, 不變이다(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자연법의 命令은 時代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물건의 共同所有와 私的所有는 각각 그 적절한 환경에 있어서는(in its appropriate

2) F. W. Kelsey and others, trans, op. cit., pp.26~27.

3) Ibid., p.39.

setting) 동등하게 自然的이다는 陳腐한 公理(法則)를 반복하였다.⁴⁾ 그러면, 자연법은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는 무엇을 명령하는가? 이 해답은 「戰爭과 平和의 法」의 제2권 제2장에 나타난다.

天地創造時에 그리고 노아의 大洪水(Noah's Flood) 후에, 다시 神은 이 세계를 共同의 遺産으로서 이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여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大地(地球)가 無料로(對價 없이) 제공하는 것들만을 소비하는데 만족하였으므로, 투쟁 없이 살았다. 유일한 私有財産은 각인이 그의 직접적 利用을 위하여 모아 놓은 所費物이었다. 이리하여, 이러한 사유재산을 흠치는 것은 自然法에 의하여 금지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의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물건이 풍부한 한 도둑질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것이 詩인들이 찬미하는 黃金時代(the golden age)였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처럼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고 있는 곳이나 혹은 初期基督教徒들의 行實을 추종하는 禁慾主義的 宗教集團에서처럼 사람들이 항상 慈愛로운 곳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共同所有의 기본적 제도는 오늘날에도 存續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大地의 天然資源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貪慾과 野心'의 害惡에 의하여 그리고 보다 고상한 생활을 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은 재산을 창출·취득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싸움을 방지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私有財産制度가 요청되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은 羊·닭 기타 개인의 所持品과 같은 動産을 분할하는데 만족하였다. 그러나, 마침내는 土地도 마찬가지로 분할되었다.

그로티우스는 계속하여 설명하기를, 그 실제적인 분할은 개인의 단순한 意志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大地는 萬人의 共同所有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단순히 大地의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先占함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創設할 수 없다. 自然法上으로, 萬人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萬人은 私所有權者의 특별한 권리들이나 排他的인 特權들을 존중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예

4) Loc. cit.

컨대, 甲은 乙과 丙에게 원래는 그 3인의 共同所有인 平野(들판)를 甲 자신의 배타적인 財産으로서 존중해 주도록 강요할 수 없다. 甲을 위하여 運 좋게도, 乙과 丙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에게 강요할 수는 있다.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自然法의 一規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는 상호 스스로를 강요(강제)하는 어떤 수단(방법)이 존재하며 기타의 다른 자연적인 수단은 생각될 수 없는 것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 — 5) 결국 私所有權은 일종의 合意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분할의 경우에서처럼 明示的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先占의 경우에서처럼 默示的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사실, 共同所有가 拋棄(解體)된 바로 그 순간에(그런데, 이 이전에는 아직 어떠한 분할도 행하여져 있지 않았다), 各人이 이미 점유를 취득한 것은 무엇이던 그 各人의 所有로 된다는 데에 萬人이 合意한 것으로 想像된다."⁶⁾ 재산에 대한 이러한 최초의 분할이 있는 후에는, 先占이 所有權取得의 유일한 기본유형이 된다. 만인은 그 先占者의 권리를 존중함에 同意했으며 그리고 自然法上 萬人은 동의를 한 이상 그 동의를 取消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만, 先占은 所有權取得의 自然的 類型이다.

그로티우스는 私所有權을 創設한 合意는 政府의 설립에 先在했다고 단언하였다. 즉, 자신의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國家의 實定法이 나오기 전에 존재하였다.⁷⁾ 그러나, 정부의 설립 후에는, 所有權取得을 規律하는 규범들은 변경되었다. 主權者인 君主는 相異한 諸方法으로 새로운 영역을 領有할 수 있다. 즉, 그는 그 영역의 統治權만을 보유하고 개인들의 先占 또는 君主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타의 所有

5) Ibid., p.14.

6) Ibid., pp.189~190. 그로티우스는 독자들에게 그의 初期의 著書인 海洋自由(Mare Liberum, 1609년 간행) 제5장을 참조하도록 권한다. 이 제5장에는, 위와 동일한 所有權理論이 概括되어 있다. 또한, 그로티우스는 英國의 榮光(the glory of England)인 John Selden의 著書인 海洋閉鎖(Mare Clausum, 1635년에 London에서 간행)를 참조하도록 권한다. 이 著書는 그로티우스의 소유권이론을 승인하여 반복하고 있다.

7) F. W. Kelsey and others, op. cit., p.40·p.295. 그로티우스는 로마(Roma)의 法學者들의 주장, 즉 所有權取得類型들은 萬民法(the law of nations)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주장을 否認하였다. 즉, 그로티우스는 소유권취득의 유형들은 '소유권의 창설보다는 뒤(後)이지만 모든 市民法에는 先在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自然法의 일부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로티우스는 만민법과 國際法(international law)을 동일시하였다.

權取得의 유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거나, 또는 군주가 그 새로운 영역의 통치권과 소유권 모두를 가질 수도 있다.⁸⁾ 그 군주는 역시 자연상태에서는 승의에 의하여 그 先占者에게 속하는 諸物件(예컨대, 野生動物·無主의 보석·遺言 없이 사망한 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⁹⁾ 끝으로, 그 군주는 어린이나 狂人들에게 재산의 소유를 허용함에 의하여 그리고 法습에만 기초한 권리를 승인함에 의하여 自然法의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변경들은 별문제로 하고, 국가는 그 국민의 소유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예컨대, 遭難당한 물건들(shipwrecked goods)들을 군주에게 귀속시키는 實定法은 정당하지 않으며,¹¹⁾ 또한 군주가 그 臣民의 소유권을 박탈하는(즉, 그 신민의 재산을 收用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군주는 그 신민의 회생에 대하여 補償을 하여야 한다.¹²⁾

3. 批判

그로티우스의 所有權理論은 自然權學派(natural rights school)의 소유권이론이다. 그러나, 자연권이론에 대한 그로티우스의 특수한 설명은 심각한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제거하는 것은 그로티우스 이후의 이론가들의 과제였다. 그로티우스는 소유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구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실, 그로티우스는 全人類에 의하여 승인된 假想的 協約(suppositious convention subscribed by----)에 소유권의 근거를 둔다. 의문의 여지 없이, 자연법은 그 협약을 존중하도록 강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 자신이 自認한 것처럼¹³⁾ 그의 이

8) Ibid., p.192·p.207. 그로티우스는 統治權과 所有權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네카의 公理(Senecan maxim) 즉 '最上의 權力은 王에게, 소유권은 私人에게'를 引用한다.

9) Ibid. pp.297ff·pp.269ff.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그로티우스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死亡한 者의 子女들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自然權을 가진다고 斷言한다. 유언을 할 권리는 추측전대 국가도 否認할 수 없는 자연권의 일종이다(Ibid. pp.265~266).

10) Ibid. p.208·pp.220.

11) Ibid. p.267.

12) Ibid. p.807.

론에 의하면 소유권은 人意法(jus humanum 즉 human law)의 創造物이다. 여기에 2개의 難題가 있다. 그 첫째는, 모든 契約理論에 공통된 것으로서, 그러한 계약이 전에 체결된 사실이 否認될 수 있으며 설사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약이 어떻게 그 체결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강요(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그 두번째는, 소유권이 인간의 權能에 의하여 創設되었다면 소유권은 왜 인간의 권능에 의하여 폐지될 수 없는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대답은 어떤 協定이라도 모든 당사자들이 그 폐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폐지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단 1명의 소유자라도 그 폐지를 반대하면 소유권은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自然的 平等을 파괴하여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不可變更의 協定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어느 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지금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그로티우스의 대답은 그의 理論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약점을 노출한다. 기타의 自然法理論家들과 동일하게, 그로티우스 역시 私有財産制度는 사람들의 권리의 自然的 平等을 진정으로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所有權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各人이 '그의 것'을 享有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¹⁴⁾ 그러나, 各人이 平等權을 가지는 이러한 '그의 것'이란 무엇인가? 어떤 때에는,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그의 것을 各人이 그의 勞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定義하는데에 접근하였다.¹⁵⁾ 그러나, 나중에는 그는 이를 否認하였다. 이 否認은 노동은 諸物件에 투하(적용)되어야 하며 萬物은 사람들이 私有財産의 創設에 합의하기 전에도 萬人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共同所有物은 사람이 그 물건에 노동을 가했다는 이유만

13) Ibid., p.30.

14) Ibid., p.322. 그의 著書인 『戰爭과 平和의 法』 제2권 제12장은 이러한 평등은 財貨의 모든 교환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통상적인 理論을 설명한다. 즉, 獨占과 기타의 특별한 特權은 自然法에 의하여 금지된다.

15) Ibid., p.189. 여기에서, 그로티우스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勞動이 그들에게 取하도록 權限을 준 것보다도 더 많이 共同所有財貨로부터 취했을 때, 原始的 共同所有가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묘사한다.

으로는 私有로 될 수 없다.¹⁶⁾ 사실, 所有權法이 보호하는 '그의 것'은 개인이 취득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소유권에 적용되는 권리의 평등은 萬人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私有財産制度는 (취득할 어떠한 권리도 없이) 이미 취득한 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先占者에게 正式의 所有權을 부여하는 사람들 간의 一合意였다. 어느 한 사람이 先占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量에 관하여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던 이러한 합의의 결과로서, 萬物은 오래지 않아 私有物로 변하였고 그리고 평등한 取得權은 실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요컨대, 그로티우스의 理論은, 이 이론이 잘 알려진 文句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自然權理論이 아니다. 그로티우스의 이론은 자연법으로부터가 아니라 人間들의 合意로부터 所有權을 도출한다. 그로티우스의 이론은 사람들이 왜 권리의 平等을 제거하는 合意 즉 共同所有財産에서의 자신의 몫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였고 永久化하였는 合意에 찬동하였어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4. 영향

많은 사람들이 그로티우스의 저서를 읽었던지 또는 그로티우스가 그의 同時代사람들에게 이미 명백한 것을 記述하였던지 간에, 그로티우스의 소유권이론은 17세기에 있어서 되풀이 해서(몇번이고) 해설되었다. 그로티우스의 이론은 가장 박학한 權威者들에 의하여 英國에 소개되었다. 즉, 존 셀덴(John Selden)은 '가장 유명한 후고 그로티우스의 이론'에 찬동하였으며 히브류(Hebrew)와 아랍(Arab)의 參考文으로써 그로티우스의 이론을 보강하였다.¹⁷⁾ 기타 영국의 저술가들은 그로티우스나 셀덴의 이론을

16) Ibid., p.206.

17) John Selden, Mare Clausum, London, 1635, 1, 4. 이 Mare Clausum(海洋閉鎖)은 1652년에 Marchamont Nedham에 의하여 Of the Dominion, or, Ownership of the Sea라는 書名으로 변

敷衍하였고 또한 所有權에 관한 自然權理論의 기본적 개념들은 급속히 영국에 정착되었다.¹⁸⁾ 이러한 개념들은 普通法과 大憲章(Magna Charta)을 理性法과 自然法의 化身(具體化)으로서 생각하는데 이미 익숙해 있었던 入憲의 著述家들에 의하여 異議 없이 취하여졌다.¹⁹⁾ 國王(君主)의 課稅는 自然法뿐만 아니라 普通法에도 위반된다고 불평하면서 스투어트(Stuart) 왕朝의 초기의 2國王(君主)을 반대하였던 者들은 장기간 확립된 入憲의 傳統을 존중하고 있었다. 英國人들의 자연권의 위대한 옹호자인 존 릴번(John Lilburne)은 英國法에 관한 法律家들의 註釋 속에서 이러한 自然權을 발견하였다.²⁰⁾ 자연권의 普遍화된 전통과 유럽(Europe)大陸에서 수입된 이론과의 결합은 17세기말에 존 로크(John Locke)의 업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Ⅲ. 존 로크의 所有權思想

1. 序說

존 로크의 著書인 「市民政府에 관한 2篇의 論文(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²¹⁾은 영국에서의 名譽革命 및 議會政府의 승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690년에 런던(London)에서 출간되었다. 이 저서는 곧

역되었다. 이 Mare Clausum은 海洋의 自由를 주장한 그로티우스의 著書인 Mare Liberum(海洋自由)에 대한 論駁으로서 씌어졌다.

18) Richard Cumberland, *De Legibus Naturae*, London, 1672; Samul Parker, *A Demonstration of the Divine Authority of the Laws of Nature*, London, 1681; Gabriel Towerson, *Explication of the Decalogue*, London, 1676. 타워슨(Towerson)과 기타의 神學者들은 私所有權의 옹호로서 十誡을 引用하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慣例를 계속하였다(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Richard Schlatter, *Social Ideas of Religious Leaders*, 2, 1 참조).

19) C. H. McIlwain, *The High Court of Parliament*, New Haven, 1919, pp.105~108; J. W. Allen, *English Political Thought*, London, 1938, p.37 and Pt. 7, 2.

20) William Haller and Godfrey Davies, *The Leveller Tracts*, New York, Introduction and pp.41ff.; David W. Petegorsky, *Left-Wing Democracy in the English Civil War*, London, 1940, p.81.

21) 市民政府2論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自由主義와 自然權에 관한 基本敎材가 되었다. 대체로, 존 로크는 자연권 · 自然狀態 · 社會契約 · '法에 의하여 제한되며 또한 被治者의 同意에 의거하는 政府' 등에 관한 그의 선배들의 이론을 알기 쉽고도 설득력 있게 再論하였다. 이 저서에서의 존 로크의 이론 중에서 새롭게 독창적인 부분은 所有權理論이다.

2. 自然狀態에서의 所有權

1) 개인의 소유권(私所有權)은 勞動에 의하여 발생함

존 로크의 새로운 所有權理論은 그로티우스(Grotius)와 푸펜도르프(Pufendorf)의 비판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었다. 王權神授說의 유명한 支持者였으며 존 로크의 저서의 標的(對象)이었던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卿은 이러한 비판자들의 논거를 분명하게 언급하였다.²²⁾ 로버트 필머는 "自然權의 지지자들이 萬人이 平等하였고 自由로웠으며 또한 모든 財産이 共同所有였던 自然狀態를 상상한다"고 記述했다. 또한, 로버트 필머는 "이처럼 불행한 原始共產主義狀態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정당한 방법은 만인이 共同所有財産의 불공평한 分配에 同意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가 일찌기 있었다는 것과 세상의 어느 개인도 만물에 대한 그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함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라고 로버트 필머는 反問하였다. 우리가 歷史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이러한 불합리하고도 억측인 同意를 그대로 忍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先祖들의 행동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개인이라도 당연의 共同所有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웃들의 所有權에 대하여 그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동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항상 그들의 동의를 撤回함으로써 그들의 합의에 기한 권리들(conventional rights)을 포기하여 그로티우스와 셀덴(Selden)이 인정했던 自然的인 共同의 權利들(natural, communal

22) 로버트 필머는 1653년에 사망하였으나, 그의 저작들은 25년을 주기로 끊임 없이 재간행되었다.

rights)을 회복할 수 있다.²³⁾ 모든 所有權을 王에게 귀속시키고 王에게 그 臣民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하는 王權神授說이 더욱 합리적이며 또한 보다 안전한 所有權理論이라고 로버트 필머는 결론 지었다. 自然權을 지지하는 思想家들은 自然法에서는 소유권의 起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에서, 로버트 필머는 王에게서 재산을 부여받은 사람이 만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발견하였다. 所有權이 平等主義者나 王의 공격에 대하여 안전하려면, 소유권은 동의에 근거할 수 없다. 존 로크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하여 사람들이 神(하느님)이 人類에게 共同所有物로 부여한 것 중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私所有權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특히 모든 共同所有者들과의 어떤 명백한 契約도 체결함이 없이 私所有權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혀 보기로 한다'고 記述하였다.²⁴⁾

傳統적인 自然法理論에 따라, 존 로크는 自然的 理性和 啓示로부터의 증명에 의하여 地球는 인류에게 共同所有로 부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푸펜도르프(Pufendorf)처럼, 존 로크는 이 때의 공동소유는 積極的인 공동소유가 아니라 消極的인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소극적인 공동소유에서는 諸物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어서 各人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머지 타인들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²⁵⁾ '그러한 동의가 만약 필요하다면, 사람은 神이 사람에게 부여한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²⁶⁾ 이리하여, 어느 1인이 共同所有인 諸物의 일부를 취했을 때 그 일부를 私所有物로서 나머지 사람(타인)들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義務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푸펜도르프는 인류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의

23) John Locke, Two Treatises of Civil Government(London: J.M. Everyman's Library 751(philosophy) Dent&Sons Ltd., 1955), p.129의 1).

24) Ibid., p.129.

25) 존 로크는 푸펜도르프의 저서에 정통했으나, 이에 의존하지 않았다. 로크가 共同所有의 이론을 독립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로크의 소유권이론의 根源에 관하여는, Czajkowski, The Theory of Private Property in John Locke's Political Philosophy, Notre Dame, 1941; Paschal Larkin, Property in the Eighteenth Century, Cork University Press, 1930 참조.

26) Ibid., p.131.

무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존 로크는 그러한 의무가 自然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단순한 합이들이 고안되기 훨씬 전에 만인을 견고히 구속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 大地 및 인간 외의 모든 被造物들은 萬人의 共同所有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身體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이 신체에 대하여는 그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사람의 신체(육체)의 勞動과 사람의 손(hands)이 하는 작업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이 공급해 준 대로의 상태(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부터 사람이 끄집어 낸 것은 무엇이던지 간에, 사람이 그것과 勞動을 혼합한 것이 됨으로써 그것에다 그 자신의 것인 그 무엇을 결합시킨 것이 된다. 이로써,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所有物로 만든다. 그것은 그 사람에 의하여 自然 그대로의 상태인 共同所有狀態로부터 導出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와 같은 勞動에 의해서 타인들과의 공동소유를 배제하는 무엇인가가 첨가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동은 바로 그 勞動者의 의심할 수 없는 재산(unquestionable property)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연의 產物이 풍부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공동소유로서 여전히 풍부하게 남겨져 있는 곳에서는 일단 노동이 가해진 것에 대하여는 그 노동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²⁷⁾ ----- 어느 사람이 갈고 씨를 뿌리며 개량하고 栽培하며 그리고 產物(수확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土地가 그 사람의 소유물로 된다. 그는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말하자면, 그 정도의 토지를 공동소유로부터 분리하여 울타리를 두른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누구나 그 토지에 대하여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그는 그의 동료인 모든 共同所有者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 토지를 專有·私用할 수 없으며(cannot appropriate) 울타리도 두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써 그의 이러한(즉, 이상에서 설명된) 권리를 無效化할 수는 없을 것이다. 神은 이 世界(大地)를 만인에 공동소유로 부

27) Ibid., p.130.

여했을 때 역시 사람에게 노동할 것을 命命하였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날의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노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神과 사람의 理
 性은 사람에게 이 大地를 占有할 것을 命命한다. 즉, 이 大地를 생활에 유
 익하도록 개량하여 그 곳에 사람의 것인 어떤 것 즉 사람의 勞動力을 投與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神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土地의 일부를 占有하
 여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은 그의 소유였던 어떤 것(그의 노동력)을 그 토지
 에 첨가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토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
 질 수 없고 또한 그 토지를 그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8) ----- 세계가 어린이들에게 공동소유로 부여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노동이 사람들에게
 게 약간의 토지를 專有·私用할 수 있는 명백한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와 그 곳에서는 그 권리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도 없고 서로 싸울 여지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勞動의 產物인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공동소유보다 더 우선
 하여야 한다는 것은, 숙고하기 전에는 아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
 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萬物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낳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담배와 사
 탕수수가 심어진 또는 밀과 보리가 파종된 1에이크의 토지와 전혀 경작되
 지 않고 共同所有地로 남아 있는 1에이크의 똑 같은 토지와의 차이가 무엇
 인가를 살펴 보면, 노동에 의한 개량이 그 토지의 대부분의 가치를 창출한
 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우리가 諸物을 이용할
 때에 그 諸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제물에 관한 여러 費用들(즉, 그 제
 물에 있어서, 순전히 자연에 기인하는 비용과 노동에 기인하는 비용)을 정
 확하게 합산하면, 29) 대부분의 경우에 비용총액의 99/100가 전적으로 노
 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30) -----

28) Ibid., p.132.

29) 이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물건이 產出(生産)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비용을 자연에 기인한 것과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합산하면"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譯者의 註釋).

30) Ibid., pp.136~137.

이상의 모든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진다. 즉, 자연의 諸物은 비록 공동소유로 부여되었으나, (사람은 그 자신의 주인이고 지혜와 그 자신의 신체와 그 신체의 동작이나 노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그 자신 내에 소유권의 중요한 근거를 가졌다는 점 및 그가 그 자신의 생활유지와 安樂을 위하여 사용한 것의 대부분을 이루었는 것은 발명과 기술이 생활의 편의를 개량하게 된 때에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타인들과의 공동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처럼 초기에는 노동이 소유권을 부여하였다.³¹⁾

요컨대, 로버트 필머는 원시인들이 공동소유재산을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이론을 비웃었다. 존 로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연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러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을 前부터 공동소유인 것과 단지 혼합함으로써 私所有權을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2) 私所有權의 限界 내지는 制限

자연상태에서 노동에 의하여 획득된 소유권은 1個人(혼자로서의 개인)이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產出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所有權만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은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總量에 의하여 제한받았으며 또한 그것은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土地所有者는 타인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規範(rule)에 의하여 더욱 더 제한을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所有權을 부여하는 바로 그 동일한 自然法은 그 소유권의 한계도 역시 규정한다.”³²⁾ ----- “적어도 물건이 傷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것은 모두가 그의 몫 이상이며 따라서 타인들에게 귀속된다.”³³⁾ -----

31) Ibid., p.138.

32) John Locke, op. cit., p.131.

33) Ibid., p.131.

그가 경작하여 그 產出物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적어도 土地가 풍부하여 타인들을 위하여 共同所有로서 여전히 풍요하게 남겨져 있는 곳에서는, 그의 所有이다.

天然資源의 剩餘가 自然狀態에서 있었다는 假定과 私所有는 제한을 받아 사람들의 自然的 平等이 유지되었다는 假定은 自然法原理에 있어서 傳統的 要素이다. 존 로크는 이러한 假定들을 반복하여 말하였으며 所有權取得의 自然的 方式은 勞動에 의하여 平等主義的(equalitarian)이었다는 결론을 忍容하였다. “自然은 인간의 勞動程度와 生活便宜에 의거하여 소유권의 한도를 적절히 定한다. 즉, 어느 사람의 노동으로써도 모든 물건을 占有하여 專有·私用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의 향락은 아주 작은 부분 이상을 소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웃사람에게 침해될 정도로 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타인이나 이웃사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취득한 후에도) 물건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의하여 專用·私用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양호하고도 충분한 所有物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직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도에 의하여 初創期에는, 각인의 소유물은 매우 적절한 정도로 한정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害하지 않으면서 專有·私用할 수 있었다.”³⁴⁾

“이리하여, 생각컨대, 과연 어떻게 하여 勞動이 共同所有인 自然物 속에서 최초로 所有權를 창설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 및 과연 어떻게 하여 그 所有物消費의 한도가 所有權의 程度를 정했는가의 문제는 어려움 없이 아주 쉽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소유권으로 인한 所有의 크기(소유할 수 있는 量)에 관한 의문도 없었다.”³⁵⁾

34) Ibid., pp.133~134.

35) Ibid., p.141.

3) 평가

이상의 記述이 私所有權의 自然的 起源에 관한 존 로크의 유명한 이론이다. 先占(occupation)에 관한 로마(Roma)法에서의 원칙과 王은 그 臣民이 賦으로써 취득한 것을 賦할 권리가 없다는 격언(이 격언은 中世와 文藝復興期(Renaissance)의 著述家들에 의하여 빈번히 반복 언급되었음)과 존 로크의 이론과의 유사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론을 발전된 형태에서 自然權哲學의 일부로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은 존 로크였다. 따라서, 그 이론의 전문가들은 존 로크만을 그 이론의 발견자 또는 발명자라고 하였다.³⁶⁾ 그리고, 그 이론은 中産階級(그 이론은 中産階級の 이론임)이 그들의 최초의 혁명적 승리를 달성한 때에 발견되었음이 틀림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中産階級の 일상적 경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勞動이 노예·農奴·小作農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產物은 주인이나 封建領主의 소유였던 古代나 中世社會에서는, 所有權에 관한 존 로크의 이론은 不適切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서의 大集團의 생산자들(즉 그들이 소유하였거나 만들었던 물건들을 市場에 팔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勤勉에 의하여 재산을 획득하였던 사람들 또한 주인이나 領主로부터 구속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 로크의 所有權理論은 自명한 것처럼 보였다. 自然法에 의하여, 물건은 그 製作者에게 귀속하였다. 經濟的 特權集團을 創設하는 封建制度와 王法(royal law)은 사실상(실제에 있어서) 非特權集團에게서 自然權에 의하여 非特權集團에 속하는 것들을 박탈하였다. 正當한 法은 各自에게 그들의 노동의 產物을 보장하였다.

1690년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재산에 대하여 自然權을 가진다는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1690년 이후에 이 이론은 社會科學에 있어서 하나의 自명한 理致(原理)로 되었다. 1690년은 中産階級이 집권한 해(年) 즉 존 로크에 의하여 哲學的 言語로써 治統된 中産階級の 경험이 물건에 대한 영원한 진리로서 세상에 나타났던 해(年)

36) Otto von Gierke, *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translated by Ernest Barker, Cambridge, 1934, pp.103~104.

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존 로크의 所有權理論은 사실상 애매모호하였다는 것, 이 이론은 중산계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巨大한 富를 비난하는 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 및 이 이론은 特權階級과 그들의 所有權이 무효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소유권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오늘날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날과 같이 존 로크에게도 명백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로크가 현존하는 소유권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을 굉장히 보고 싶어했다고 하여도, 그가 그의 이론의 급진적인 결과(영향)를 알았다는 것 및 그가 그의 이론을 현존하는 소유권의 정당화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著書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3. 오늘날의 所有權

1) 2개의 合意에 기함

이처럼 私所有權이라는 필연적인 형태는 모든 인류의 滿場一致의 동의 없이 창설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유권은 自然的이다. 그러나, 사실상, 所有權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合意에 기한 것(property is now conventional)이라고 존 로크는 附言하였다. 오늘날의 소유권은 사람들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오직 사람들이 소유권의 존중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유효하다. 오늘날의 所有權形態를 낳게 한 합의에 관한 로크의 언급은 단편적이지만, 그는 2개의 合意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그 첫번째는 사람들이 貨幣의 이용을 합의하였을 때였다.

“만약 화폐의 발명 및 화폐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데 대한 사람들의 묵시적인 합의가 스스로 이용가능한 이상의 많은 私所有物들과 이 소유물들에 대한 私人的 권리를 (동의로써) 처음으로 초래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살펴 본 소유권에 관한 規範(각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量만큼만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범)은 이 세상에는 인구의 2배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土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곤란하게 함이 없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

을 것임을 나는 감히 확신한다.”³⁷⁾ ----- “화폐는 사람들이 腐敗시키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耐久物이다. 또한, 화폐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사람들이 참으로 有用하지만 부패하기 쉬운 生活用品들을 받고 지불하는 일종의 耐久物이다. 그리고, 勤勉의 정도가 사람들에게 소유물의 量에 있어서의 차이를 부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발명은 인간에게 所有物量의 차이를 유지 또는 확대시켰다.”³⁸⁾

두번째의 合意는 사람들이 政治的인 社會를 구성한 후에 同意한 實定法과 이들 社會 간에 성립된 協定(trea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諸社會들은 그 각각의 명확한 영역의 범위를 협정하였고 또 그 각각의 社會는 그 내부적으로는 동의에 기한 法에 의하여 그 社會의 私所有權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社會는 契約과 합의에 의하여, 勞動과 勤勉이 창설하는 소유권을 규정한다.”³⁹⁾

이리하여, 결국 존 로크는 소유권은 사람들의 合意에 기한 創造物(property is the conventional creation)이라는 옛 理論으로 복귀하였다.⁴⁰⁾

2) 평가

오늘날의 소유권에 관한 존 로크의 이론은 불균등한 분배 및 오늘날 사회에서의 난해한 소유권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데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존 로크는 오늘날 사회에서의 소유권이 자연법과 일치되도록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거나 분배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존 로

37) Ibid., p.134.

38) Ibid., pp.139~140.

39) Ibid., p.135에서, 로크는 소유권이 오늘날에는 合意에 기한 것임을 반복한다. 특히, ‘사람들은 同意에 의하여 각 都市들 간의 명확한 영역의 범위를 협정하는 時期에 돌입하여 각 도시들 간의 境界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는 내부적으로는 法에 의하여 그 社會(都市)에 속하는 사람들의 所有權을 규정하였다’고 論述한다.

또한, 로크는 自然狀態에서는 相續權을 子女의 自然權으로 파악한다(Ibid., pp.62~67). 그러나, 社狀態에서는, 未成年者는 그 자신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상속할 자연권을 가지지만, 實定法과 價値이 그 상속의 分配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Ibid., pp.159~164).

40) Leslie Stephen, English Thought in the Eighteenth Century, Vol.2, London, 1902, pp.141~142(Richard Schlatter, Private Property, p.158에서 再引用).

크의 後繼者들과 다르다.⁴¹⁾

4. 批判

존 로크가 誤解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존 로크는 시민정부에 관한 2편의 논문의 第2卷 第5章(所有權에 관하여)에서 오늘날의 소유권은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附言하였다. 그러나, 존 로크는 다음章(제6장: 父權에 관하여)에서 支配者가 政府契約(the contract of government)으로부터 도출한 '합의에 근거한 권리들(conventional rights)'과의 비교에서, 소유권은 항상 自然的인 것이라고 확실히 示唆한다. 존 로크가 著述한 목적은 政府의 恣意的인 침탈로부터 良民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手段은 모든 正當한 政府의 權力은 被治者들의 同意에서 유래한다는 점과 被治者들은 政府가 義務의으로 보호·존중하여야 하는 일정한 不可讓의 自然權들을 보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존 로크 著書의 讀者들은 소유권은 이러한 不可讓의 自然權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소유권에 관한 論議가 政府의 起源에 관한 概要보다 앞에 記述되어 있다. 「시민정부에 관한 2편의 논문」의 제1권 제22절에서는, 生命과 自由가 不可讓의 自然權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생명과 자유가 소유권의 개념 속에 융합되어 있다. 所有權은 '生命 自由 財產'으로 定義된다.⁴²⁾ 이리하여, 합의에 기한 소유권은 생명·자유에 관한 自然權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所有權과 自然權은 독자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뒤얽혀 있다. 더욱 더, 소유권을 생명 자유와 연결시킴으로써, 영국에서의 最高甲富의 재산과 가난한 인디언(Indian)이 주어 모은 도토리는 그 종류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兩者 모두 各人이 그의 生計를 유지할 自然權 및 各人이 그의 生存維持와 安樂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共同所有狀態로부터 私有로 전환시

41) 로크는 오늘날의 분배가 합의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自發的 合意에 기초한 것이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통상의 전통적인 견해를 따랐다.

42) J. Locke, op. cit., Bk.2, Section 87 · 123 · 173.

킬 수 있는 그의 自然權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존 로크는 주장하였다. 그 인디언은 自然法에 의하여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영국인은 화폐제도의 창설과 實定法典의 제정에 의하여 이러한 금지를 失効시켰다. 존 로크는 自然的 所有權은 勞動에 의하여 生活必需品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萬人은 동등하게 自然的 所有權을 가진다고 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끝에서는, 존 로크는 各人이 어떤 방법으로 생활필수품을 취득하였는가 또한 各人이 그 생활필수품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各人이 그가 가진 것을 보유하는 것은 各人의 권리라고 示唆하였다. 존 로크는 처음에는, 오늘날의 소유권은 實定法에 의하여 창설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 로크는 끝에서는 오늘날의 소유권은 모든 실정법에 우선한다고 단언하였다. 生命·自由·所有權을 보존하기 위하여 창설된 政府는 이들 모두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영향

존 로크의 理論에서의 논리적 모호성 및 이 理論을 오늘날의 所有權關係의 正當化에 이용하려는 하찮은 시도는 지난 100년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의 전성기에서는, 이 이론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진실된 것으로 보였다. 소유권이 自營하는 職人들과 농민들의 집단에 광범위하게 분배된 모든 곳에서는, 노동이 소유권의 근거라는 사상은 쉽게 受容되었다. 소유권이 封建의 特權의 相續者들에 의해서 獨占된 모든 곳에서는, 노동이 소유권의 기초이어야 한다는 사상은 독점과 특권을 폐지하는 근거로서 봉사하였다. 恣意的인 政府가 소유자의 이익에 부응하기 쉬운 代議制度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었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生命·自由·所有權' 및 그 당연한 결과인 '同意 없이는 稅金 없음'은 革命戰爭의 합성이었다. 中産階級을 대변하는 思想家들이 진리의 확실한 해설자인 동안에는, 自然的 所有權(natural right of property)論은 표준적이고 公認된 理論이었다. 존 로크는 영국을 위하여 이 이론을 내놓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人權宣言은

존 로크의 이론을 프랑스의 公式的인 理論으로 만들었다. 제퍼슨(Jefferson)은 미국의 獨立宣言文에서 自然權의 불완전한 目錄(partial list)에서 소유권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은 많은 州權利章典(State Bills of Rights) 특히 버지니아(Vergina)州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州의 權利章典에는 명백하게 규정되었다. 끝으로, 존 로크의 이론은 古典學派의 또는 中産階級의 公認된 經濟理論이었다. 즉, 아담 스미스(Atham Smith)는 '사람이 그 자신의 勞動을 통하여 취득한 所有權은 기타의 모든 소유권의 原初的 基礎이므로, 가장 신성하고 불가침이다'고 記述하였다.

소유권에 관한 기타의 이론들은 전적으로 망각되지는 않았다. 教會와 封建領主의 소유권을 보다 대규모로 그리고 보다 극적으로 沒收하기 위하여, 實定法이 창설한 것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전히 편리하였다. 啓蒙專制政治를 통하여 개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專制君主에게 그 臣民의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혁명의 過度함을 두려워한 保守主義者들과 自然權原理의 과도한 個人主義를 두려워한 急進的 理論家들은 존 로크의 이론에 대립하는 이론을 詳述하였다. 즉, 버크(Burke)나 루소(J. J. Rousseau)는 소유권에 관한 自然權理論을 受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思想家들은 존 로크의 이론을 受容하였다. 이에 따라, 존 로크의 이론은 19세기에 社會主義者들이 존 로크의 理論을 盜用하고 功利主義者들이 존 로크理論의 代替理論을 발견하기까지 正統의 원리로 인정되었다.